

#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656
----------	------

제출년월일 : 2015. 6.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조항 신설(제3조의3)
- 소관 중앙 부처 명 정리(제4조 및 별표 1)
-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별표 1)

개정조례안 : 불임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예산수반사항 : 불임

사전입법예고 : 2015.4.20. ~ 5.10.(20일간) - 의견있음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현행조례(전문)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발췌서) 등

##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시장”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를 “이 조례에”로 한다.

제4조제3호 및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회 계 과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박재근
	담당.팀장 직위.성명	경리계장 박은학
자	담당자 성명.전화	이광희 (행정 3071)

[별표 1]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시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 ② (생략)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u>시장이</u> 따로 정한다.</p>	<p>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u>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이 따로 정한다.</p>
<p>제3조의3(신설)</p>	<p>제3조의3(여비 부담 수령시 가산징수) ① <u>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u>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u>                      2. <u>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u>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p>
<p>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예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1.~2.(생략)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u>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u>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6. (생략)                      7. 제29조제1항중 “<u>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u>”, 같은 조제2항 중 “<u>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u>” 및 같은 조제4항 중 “<u>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u>”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u>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u>”은 “<u>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u>”으로, “<u>공무원 보수 규정</u>”은 “<u>지방공무원 보수 규정</u>”으로, “<u>계약직 공무원 규정</u>”은 “<u>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u>”으로, “<u>일반계약직 공무원</u>”은 “<u>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 공무원</u>”, “<u>전문계약직 공무원</u>”은 “<u>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u>”으로 본다.</p>	<p>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u>이 조례에</u>-----                      -----                      1.~2.(현행과 같음)                      3. -----<u>인사혁신처장</u>-----                      -----                      4.~6.(현행과 같음)                      7. ----- <u>인사혁신처장</u>-----                      -----<u>인사혁신처장</u>-----                      -----<u>인사혁신처장</u>-----                      -----                      8.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u>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u>”은 “<u>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u>”으로, “<u>공무원 보수 규정</u>”은 “<u>지방공무원 보수 규정</u>”으로, “<u>공무원임용령</u>”은 “<u>지방공무원임용령</u>”으로, “<u>일반임기제 공무원</u>”은 “<u>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u>”, “<u>전문임기제 공무원</u>”은 “<u>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u>”으로 본다.</p>

현행

개정안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분	생략	숙박비 (1야당)
제1호	생략	46,000 (시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생략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교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생략)

4.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기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현상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생략)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분	생략	숙박비 (1야당)
제1호	생략	46,000 (시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생략	4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교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현행과 같음)

4.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기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현상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현행과 같음)

#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656
----------	------

제안년월일 : 2015. 7. 8.

제안자 : 기획행정위원장

## □ 수정이유

-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인용하는 관계법령을 정확하게 표기함.

## □ 주요골자

- 안 제4조 본문 중 “ 「공무원여비규정」 ”을 “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각 호에서 인용하는  
관련 조문 앞에 “영”을 각 삽입함.(안 제4조)

#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2”를 “영 제8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제17조”를 “영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8조”를 “영 제18조”로, “관용차량관리 규칙”을 “공용차량관리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24조”를 “영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7조”를 “영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9조”를 “영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별표1]”을 “영 [별표1]”로 수정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u>조례</u>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예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1.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p> <p>3. 제17조제1항 단서 중 <u>행정안전부장관</u>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p> <p>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안산시 <u>관용차량관리 규칙</u>」제4조"로, "동규정[별표 1]"은 "동 규칙[별표 1]"로 본다.</p> <p>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p> <p>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7. 제29조제1항중 "<u>행정안전부장관</u>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u>행정안전부</u></p>	<p>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u>조례</u>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예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1. <u>제8조의2</u>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2. <u>제17조·제22조·제26조</u>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p> <p>3. <u>제17조제1항</u> 단서 중 <u>인사혁신처장</u>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p> <p>4. <u>제18조제1항</u>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안산시 <u>관용차량관리 규칙</u>」제4조"로, "동규정[별표 1]"은 "동 규칙[별표 1]"로 본다.</p> <p>5. <u>제24조제5항</u>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p> <p>6. <u>제27조</u>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7. <u>제29조제1항</u>중 <u>인사혁신처장</u>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u>인사혁신</u></p>	<p>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 ----- 1. 영 제8조의2----- ----- ----- 2. 영 제17조----- ----- ----- 3. 영 제17조----- ----- ----- 4. 영 제18조----- ----- ----- <u>공용차량관</u> <u>리 규칙</u>----- ----- ----- 5. 영 제24조----- ----- ----- ----- 6. 영 제27조----- ----- ----- 7. 영 제29조----- ----- -----</p>

